

[별지]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 인건비 지출현황

□ 1998년도

(단위 : 원)

월 별	계	생·체실장	헬 스	헬 스	리듬체조	탁 구	기타(강사)
		고광학	윤 주	백동교	정미란	이미경	
계	12,890,000	2,900,000	1,800,000	2,400,000	1,980,000	1,400,000	1,410,000
11월	4,490,000	1,050,000	650,000	850,000	710,000	700,000	530,000
12월	8,400,000	1,850,000	1,150,000	1,550,000	1,270,000	700,000	1,880,000

□ 1999년도

(단위 : 원)

월 별	계	생·체실장	헬 스	헬 스	요 가	행정요원	에어로빅	기 타
		고광학	윤 주	성운현	이영희	신정숙	윤 희	
계	109,085,400	20,278,800	11,508,000	12,633,600	12,944,400	11,235,600	10,148,400	30,336,600
1월	7,654,9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450,000
2월	10,500,74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5591,500
3월	7,890,4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685,500
4월	10,511,9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592,000
5월	7,764,1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559,200
6월	10,482,9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563,000
7월	7,733,9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529,000
8월	10,386,4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466,500
9월	7,698,4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493,500
10월	10,406,4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486,500
11월	7,659,400	1,326,400	766,000	822,300	854,700	750,800	684,700	2,454,500
12월	10,385,300	2,053,400	1,152,000	1,283,300	1,302,700	1,121,800	1,006,700	2,465,400

□ 2000년도

(단위 : 원)

월별	계	생·체실장	헬스	헬스	요가	행정요원	에어로빅	기타
		고광학	윤주	성운현	이영희	신정숙	윤희	
계	112,999,220	26,727,000	12,987,600	17,085,000	10,285,200	12,582,840	11,743,920	21,587,660
1월	8,065,8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2,310,400
2월	11,061,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582,000
3월	7,086,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331,000
4월	11,161,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682,000
5월	7,491,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736,000
6월	11,485,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2,006,000
7월	7,689,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934,000
8월	10,659,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180,000
9월	7,869,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2,114,000
10월	11,377,78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898,000
11월	7,695,480	1,636,200	825,100	1,061,250	672,550	803,870	756,510	1,940,000
12월	11,345,040	2,818,300	1,339,500	1,786,250	1,041,650	1,293,270	1,200,810	1,874,260

□ 2001년도

(단위 : 원)

월별	계	생·체실장	헬스	헬스	요가	행정요원	에어로빅	기타
		고광학	윤주	성운현	이영희	신정숙	윤희	
계	112,881,080	28,213,400	13,963,800	17,993,800	11,263,200	13,637,000	12,808,200	15,001,680
1월	9,104,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592,000
2월	9,206,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694,000
3월	14,096,080	3,716,200	1,783,400	2,353,400	1,397,600	1,731,000	1,612,600	1,501,880
4월	8,705,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193,000
5월	8,563,2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051,100
6월	13,754,200	3,716,200	1,783,400	2,353,400	1,397,600	1,731,000	1,612,600	1,160,000
7월	9,067,8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555,700
8월	9,348,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836,000
9월	13,912,200	3,716,200	1,783,400	2,353,400	1,397,600	1,731,000	1,612,600	1,318,000
10월	8,576,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064,000
11월	8,548,100	2,133,100	1,076,700	1,366,700	883,800	1,055,500	996,300	1,036,000

보충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면)

전덕생 의원

□ 질 문

- 생수의 보급으로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원인자인 생수업체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하수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 답 변

-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제9조 및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산정하고, 지하수·하천수 등인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및 관리는 “도”의 업무로 기이 먹는샘물제조업체로 하여금 먹는물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판매액의 1000분의 7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 부담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납부·관리하고 있기에 하수도사용료와 관련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질 문

- 상수도노후관 지역을 도면표시 제출요망

□ 답 변

- 우리 시 노후관대상지역 현황도면 제출전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기이 제출한 도면으로 같음

□ 질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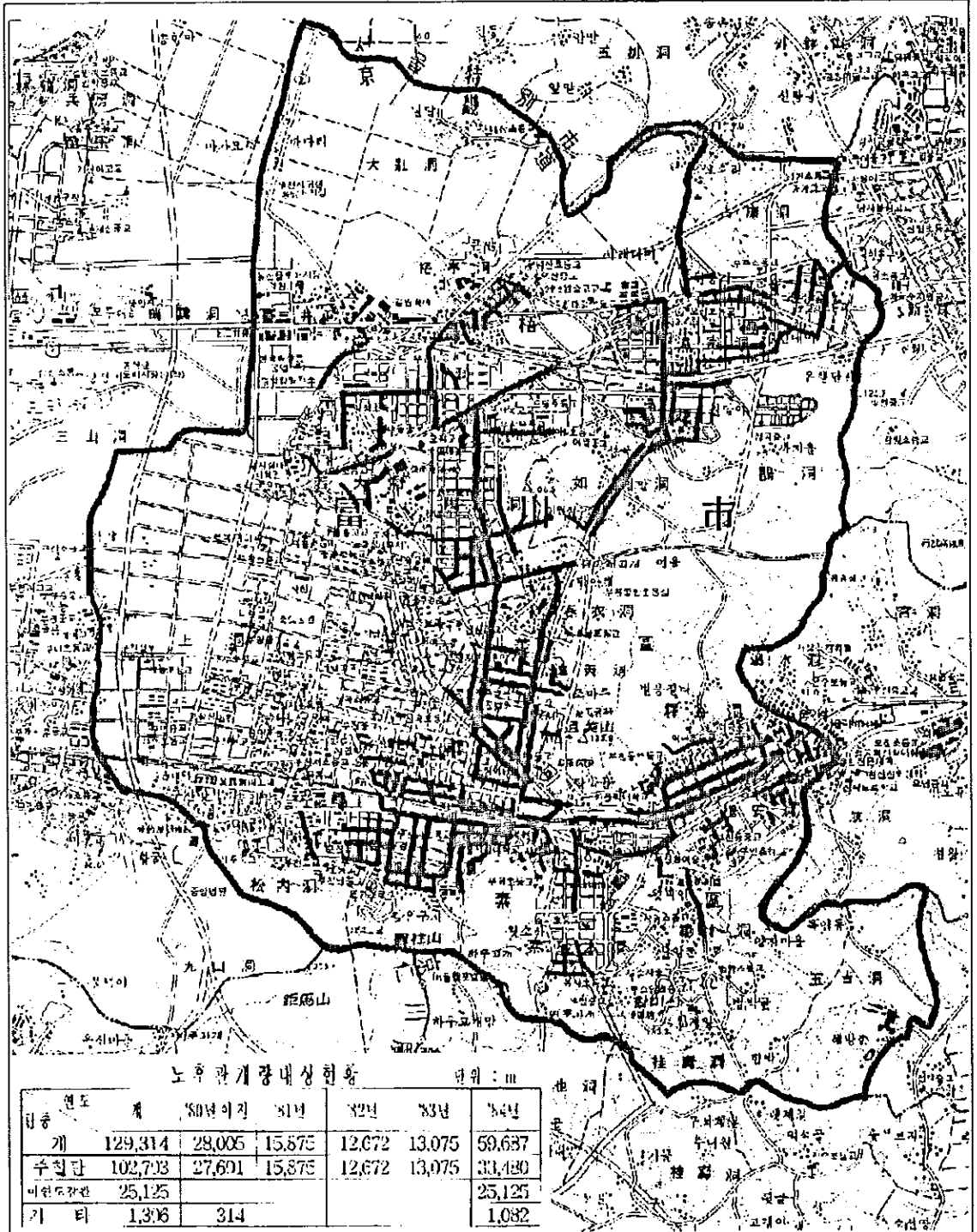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양과 금액에 대하여 감사실의 감사결과와 향후 대책?

□ 답 변

- 청소사업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는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사실은 정기종합감사 이후 집행된 사안임
- 금번 질문내용에 따라 청소사업소에 집행자료를 요구한바 주민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소각장반입을 저지함으로써 2001년도 1회 추경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잔재물 처리에 207,000천원을 확보하여 2001년 6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770톤을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금번에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는 2002년 청소사업소 정기종합감사시 중점 감사할 계획임

노후관 개량 대상현황

축척=1:50,000



노후관 개량 대상현황

단위 : m

연도	계	80년까지	81년	82년	83년	84년
합계	129,314	28,005	15,875	12,672	13,075	59,687
수질단	102,703	27,601	15,875	12,672	13,075	33,480
이원도강변	25,125					25,125
기타	1,306	314				1,082

박노설 의원

□ 질 문

○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추진관련

- 주차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차면적을 축소시키고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의향은?

□ 답 변

- 저희 부천시는 나무·꽃·물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유공간이 있는 곳마다 공원을 만들고 심지어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를 심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차단을 위하여 설치한 방음벽에까지 담장이 넝쿨을 심고, 학교 등 공공시설은 물론 가정에까지 제비용을 보급, 심게 함으로써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녹지를 가능한 최대로 확대하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방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주차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줄여서라도 녹지를 확보, 푸르름의 테크노파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참고로 테크노파크 2차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시정의 기본방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등을 수차례 거쳐 반영하여 완충녹지는 물론 건물의 배치까지도 지역주민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